

## 안양시 청년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9. 6. 10 규칙 제153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청년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① 「안양시 청년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청년상 시상부문별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각 분야에서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청년상의 수상자가 될 수 없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청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양시 청년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4. 부문별 공적증빙서류 1부
5. 재직증명서 1부(수상후보자가 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6. 사업자등록증(수상후보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1부(수상후보자가 봉사 실적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시상 20일 전까지 조례 제7조에 따른 안양시 청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4조(심사방법) ① 청년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청년업무담당부서장이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결격사유, 수상경

력, 지역주민 여론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며, 필요시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2차 심사는 위원회에서 청년상 수상후보자 전원의 공적내용과 증빙자료 등을 검증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안양시 청년상 심사평가 채점표에 따라 채점한다.

제5조(자료 제출 요청 등) 위원회는 청년상 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의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심사서류의 배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2차 심사 3일전까지 심사서류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상자 결정) ① 청년상 수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평균하여 최고 득점자로 결정한다. 단, 최고 득점자의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부문은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항목 중 성취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수상자로 결정하고, 성취도의 평균점수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③ 청년상 각 시상부문에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2차 심사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수상자로 결정한다.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청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내용·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안양시 청년상 수상자 명부에 기록하고 영구보존한다.

제9조(위원회 명단 비공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명단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직			속		
직		위		등	급(직급, 계급)
				공적기간	
				년	
				월	
공적요지(50자 내외)			공적부문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직		급		①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	명
				직인	

(후면)

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 포상 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공 적 사 항			

※ 공적 내용이 본 지면으로 부족할 경우 별지에 추가 기재

공 적 조 서 (을)

공 적 사 항

##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성 명	성 별	공적기간	공 적 개 요

[별지 제3호서식]

(전면)

안양시 청년상 심사평가 채점표

[○○○부문]

확 인	위원장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후보자 성명				
계		100점					
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이룬 성과의 정도</li> </ul>	40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li> <li>향후 지속 기여 가능성 등</li> </ul>	30					
공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부문 공적기간</li> </ul>	15					
지역여론 및 신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근무지 동료들의 여론</li> </ul>	15					
수상경력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부문 공적에 대한 수상경력</li> </ul>	5					

심사위원    ○ ○ ○    (서명)

(후면)

안양시 청년상 심사평점 기준표

구 분	배점 (100)	평점기준					
성취도	40	해당 부문 성취도에 따라 아래의 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탁월		우수		보통	
		40 ~ 35		34 ~ 30		29 ~ 25	
기여도	30	해당 부문 기여도를 아래의 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탁월		우수		보통	
		30 ~ 25		24 ~ 20		19 ~ 15	
공적기간	15	해당 부문 공적기간을 아래의 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7년 이상	6년	5년	4년	3년	2년
		15	14	13	12	11	10
지역여론 및 신망도	15	지역주민여론 및 신망도를 고려하여 15점의 배점에서 아래의 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상		중		하	
		15 ~ 11		10 ~ 6		5 ~ 1	
수상경력 (가산점)	5	해당 부문 수상경력을 아래의 기준표에 따라 가산점 부여					
		장관 이상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그 밖의 각급 단체장		
		5	4	3	2		
※ 다수 수상경력이 있을 경우 최상위 훈격 1개만 인정							

[별지 제4호서식]

안양시 청년상 수상자 명부

시 상 일 자	수 상 자							공 개 적 요	비 고
	시 상 부 문	사 진	성 명 (한자)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직 위		